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1406호(號) 1931(昭和 6)년 9월 10일 목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420호(號)

1930(昭和 5)년 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74호(號)(조선국유철도 화물운송규칙[朝鮮國有鐵道貨物運送規則]) 중(中) 1931(昭和 6)년 9월 11일부터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31(昭和 6)년 9월 10일

조선총독(朝鮮總督) 우가키 가즈시게(宇垣一成)

별표(別表) 화물할인임률표(貨物割引賃率表) 중(中) 「국선(局線)과 내지(內地) 간(間) 발착(發著)의 부문[部]」을 「국선(局線)과 내지(內地) 간(間) 발착(發著: 부산[釜山] 경유[經由])의 부문[部]」으로 개정(改正)하고, 동부(同部)의 말미(末尾)에 아래[左]의 항(項)을 추가(追加)함.

품목(品目)	발역(發驛)	착역(著驛)	급종별(級種別)	임률(賃率)							기 사(記事)
				1급(級)	2급(級)	3급(級)	4급(級)	5급(級)	6급(級)	7급(級)	
보통품(普通品)	우 메 다(梅田)	용 산(龍山)	소화물급(小貨物級)	엔(円) 1.98	엔(円) 1.61	엔(円) 1.41	엔(円) 1.36	엔(円) 1.21	엔(円) 1.13	엔(円) 0.97	1 본(本) 임률(賃率)에는 접속비(接續費)를 포함(包含)함 2 조선국유철도 화물운송규칙(朝鮮國有鐵道貨物運送規則) 제69조(條) 제2항(項) 및 제74조(條)의 규정(規定)을 적용(適用)함 3 본(本) 임률(賃率)은 지정운송취급인규칙(指定運送取扱人規則) 제10조(條)제4호(號) 적용상(適用上) 보통운임(普通運賃)으로 간주(看做)함
	동(同)	인 천(仁川)	동(同)	2.06	1.67	1.46	1.41	1.26	1.17	1.01	
	동(同)	평 양(平壤)	동(同)	2.48	2.02	1.77	1.70	1.52	1.41	1.21	
	동(同)	단동(安東, 신의주하급소(新義州荷扱所))	동(同)	2.58	2.11	1.85	1.79	1.59	1.49	1.28	
	동(同)	진 남 포(鎭南浦)	동(同)	2.55	2.08	1.82	1.75	1.56	1.45	1.25	
	동(同)	목 포(木浦)	동(同)	2.19	1.78	1.56	1.50	1.34	1.25	1.07	
	동(同)	군 산(群山)	동(同)	1.83	1.49	1.31	1.26	1.12	1.05	0.90	
	동(同)	원 산(元山)	동(同)	2.41	1.96	1.72	1.66	1.48	1.38	1.18	
	동(同)	성 진(城津)	동(同)	2.91	2.37	2.07	2.00	1.78	1.66	1.41	
	동(同)	회 령(會寧)	동(同)	3.29	2.68	2.34	2.26	2.01	1.87	1.60	
	동(同)	청 진(淸津)	동(同)	3.19	2.59	2.27	2.18	1.94	1.81	1.55	
동(同)	상 삼 봉(上三峰)	동(同)	3.35	2.72	2.38	2.29	2.04	1.90	1.63		
보통품(普通品)	우 메 다(梅田)	경 성(京城)	차급(車扱)								1 본(本) 임률(賃率)은 1931(昭和 6)년 9월 10일부터 8급(級) 임률(賃率)로서 취급(取扱)하고, 매(每) 6개월의 기간(期間) 내(內)에 3천 톤(噸) 이상(以上)을 탁송(託送)한 자(者)에 대하여 본(本) 임률과의 차액(差額)을 환급(還給)함으로 함 엔(円) 7.85 2 1개(箇)당(當) 중량(重量) 5백kg(斤) 또는 용적(容積) 2입방미터(立方米)를 초과한 것에 대하여는 본(本) 임률을 적용하지 아니함 3 본 임률에 대한 운임계산 최저톤수는 11톤(噸)으로 함 4 본 임률은 지정운송취급인규칙 제10조(條)제4호(號) 적용상 보통운임으로 간주함